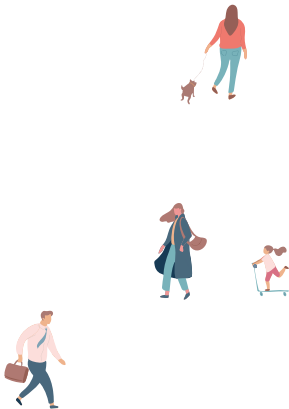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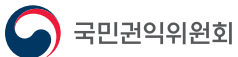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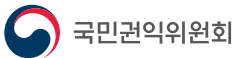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96-01

대한민국에 청렴의 꽃이 피었습니다 |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성과보고서



대한민국에
청렴의 꽃이
피었습니다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성과보고서

대한민국에 청렴의꽃이 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청렴의꽃이 피었습니다

CONTENTS

PART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개

- 12 추진체계
- 13 운영체계
- 14 추진 과정
- 16 주요 활동

PART 2.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 20 제안 1_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 26 제안 2_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 개선
- 32 제안 3_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 38 제안 4_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 44 제안 5_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 50 제안 6_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 56 제안 7_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 62 제안 8_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PART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발전 방향

- 70 청렴문화 확산
- 71 전달체계 강화
- 72 운영체계 개편
- 73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 74 제1기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위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출범한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정책협의체입니다.

*국정과제 2-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제1기 협의회는 지난 2년간 총 100여 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숙고의 과정을 거친 8건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사회에 ‘청렴’을 싹 틔울 수 있는 제안과 실천방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부 각 부처와 공유, 정책 방향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국가 청렴도는 그 나라와 각 분야의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는 39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 수준에 비하면 갈 길은 여전히 멀니다.

*CPI(부패인식지수) :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로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2018년 45위→2019년 39위로 상승

2020년에 시작되는 제2기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발간사

2018년 3월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학계, 공공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논의하는 ‘청렴사회민관 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정책협의체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청렴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청렴의 꽃이 우리 사회 전반에 필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1기 협의회에서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담긴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개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등 총 8건의 반부패 정책 제안을 발표하여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이 발굴·논의·의결될 때까지의 협의회 위원들의 노력과 활동에 대한 기록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성과를 정리하고,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물론,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도 좋은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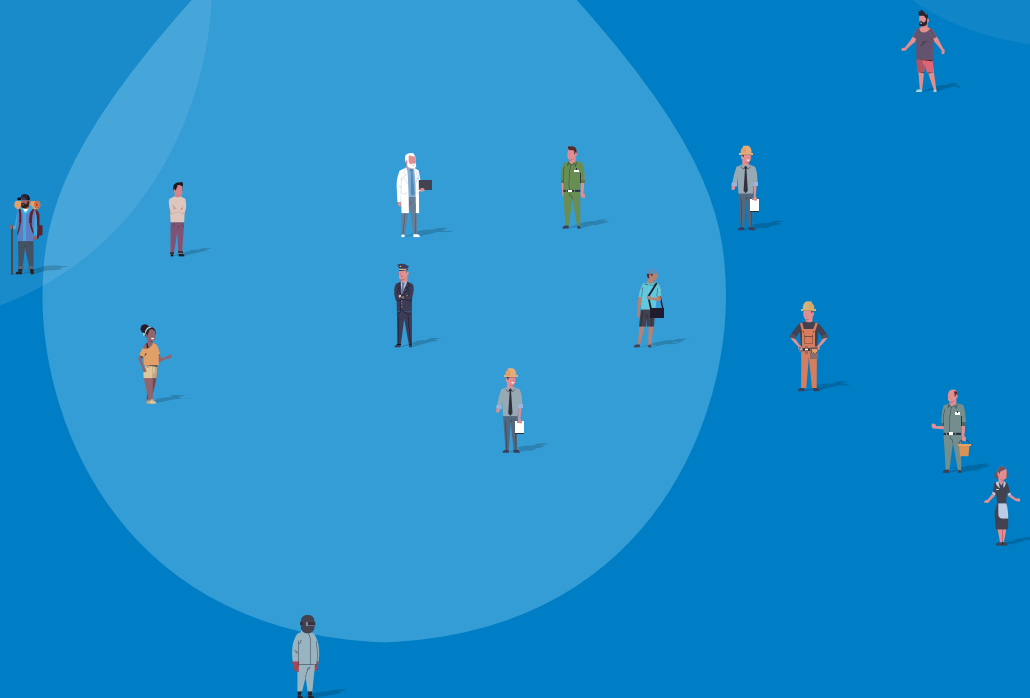
끝으로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기존 정책 제안 역할에도 힘을 쓰는 한편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
김 병 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은 정



청렴 + 사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정책을 제안하고, 청렴문화 실천 활동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추진체계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

2018년 2월26일 ~ 2020년 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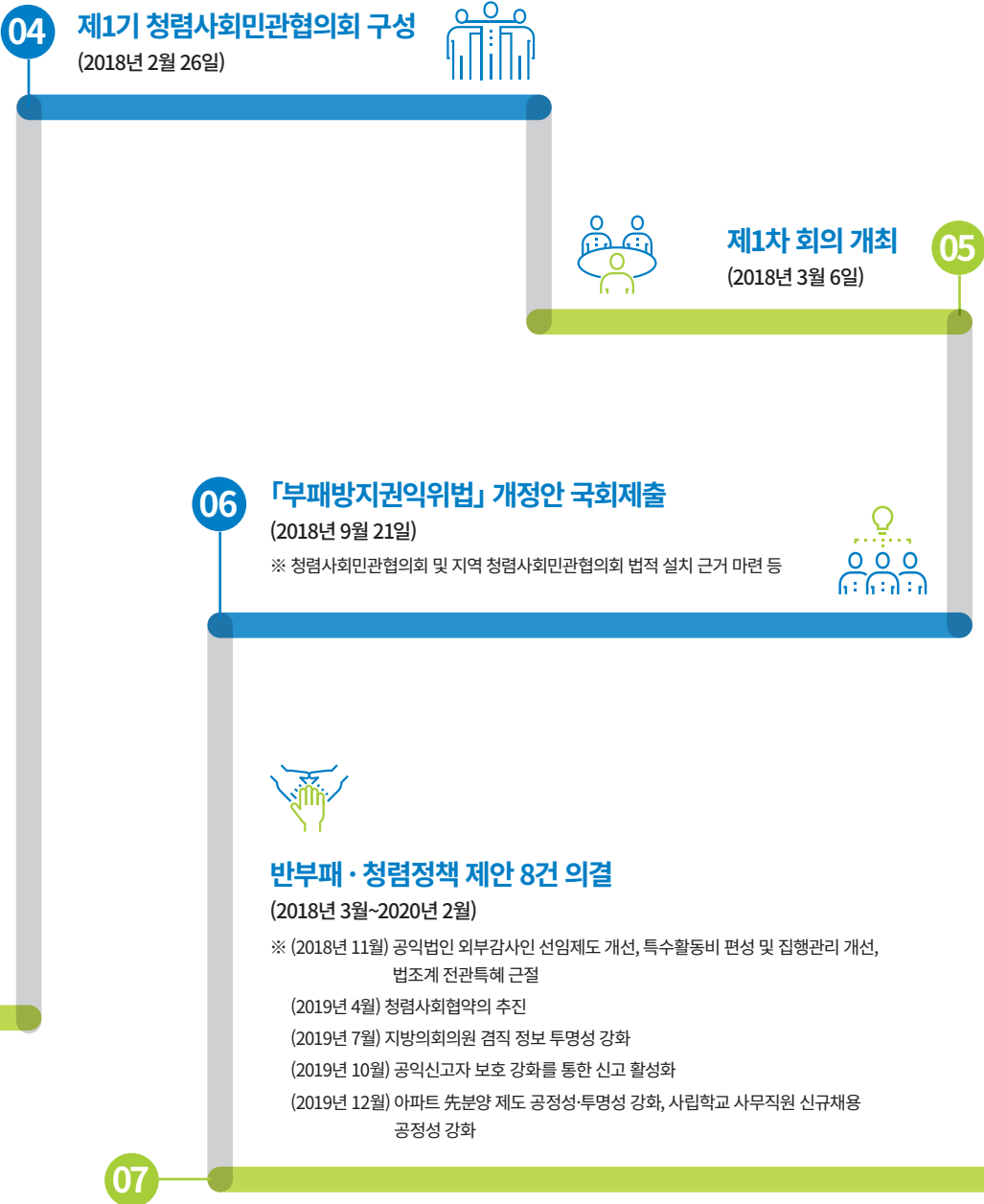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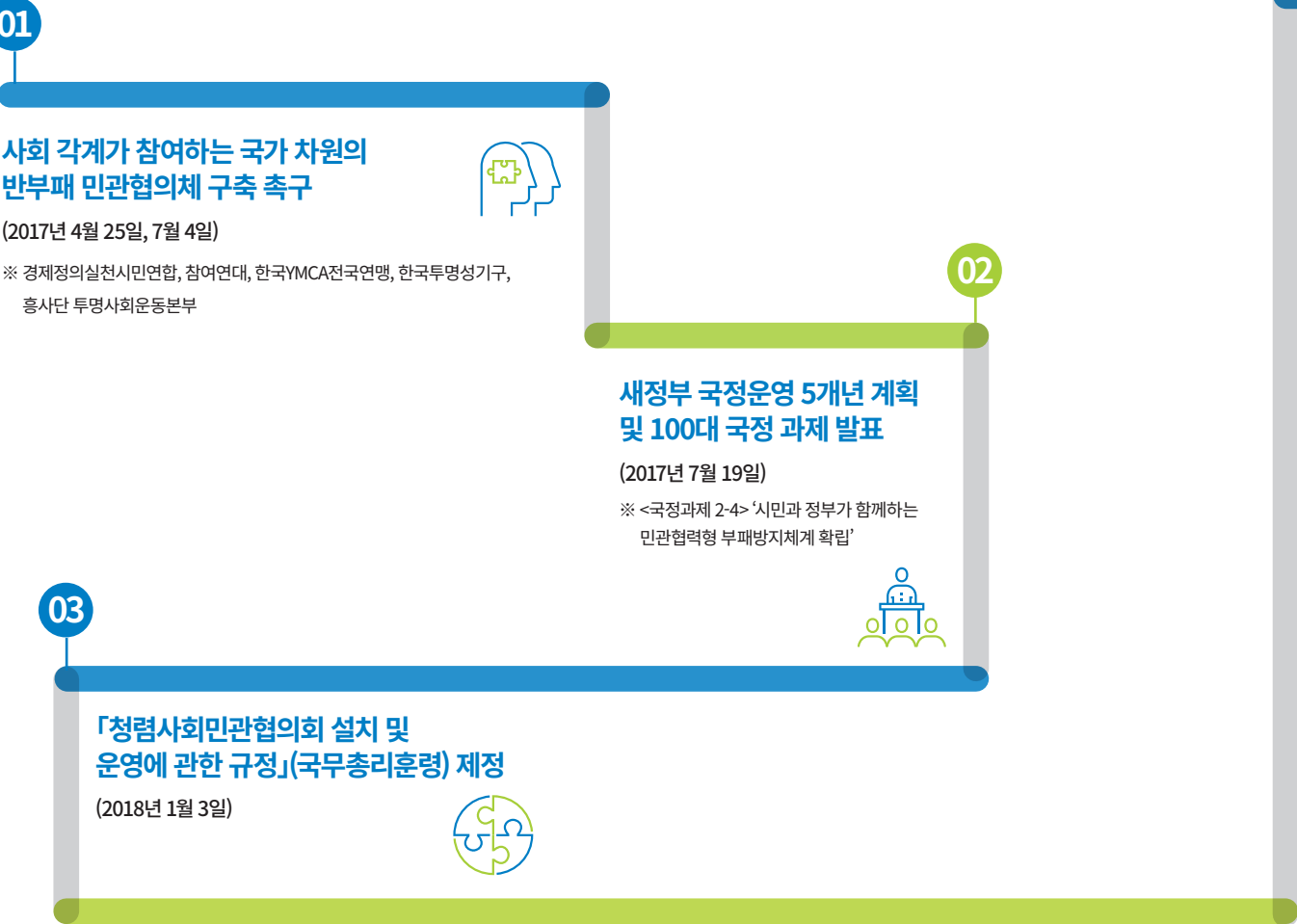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를 대표하는 인사 30명으로 이루어진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18년 1월 3일 제정)

의장 민간대표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기 어려운 부패 문제를 과감하게 의제화하고 공론화하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킨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추진 과정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주요 활동

2018년 1차 회의 (3월 6일)

-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안」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세칙안」 논의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합계획(안)」 심의·의결

2018년 2차 회의 (4월 10일)

- 청렴사회를 위한 부패인식지수(CPI) 제고 대책 논의
-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방안 토론

2019년 1차 회의 (4월 2일)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경과 보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업무 추진 경과 공유
-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정책 제안 심의·의결

2019년 2차 회의 (7월 11일)

- 청렴사회협약 추진준비단 경과 보고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준비 현황 공유
-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및 생활적폐 개선 대책 추진 상황 공유
-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정책 제안 심의·의결

2018



2018년 3차 회의 (6월 29일)

-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공공의 노력 방안 발제·논의

2018년 4차 회의 (10월 5일)

- ‘법조계 전관예우,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주제 토론

2018년 5차 회의 (11월 2일)

-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 개선>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정책 제안 심의·의결



2019년 3차 회의 (10월 14일)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정책 제안 심의·의결

2019년 4차 회의 (12월 12일)

-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공유
-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준비 경과 공유
-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정책 제안 심의·의결

2019

민 X 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는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 개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등 총 8건의 반부패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정책 제안은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고, 정부 각 부처의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1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01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배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다.

03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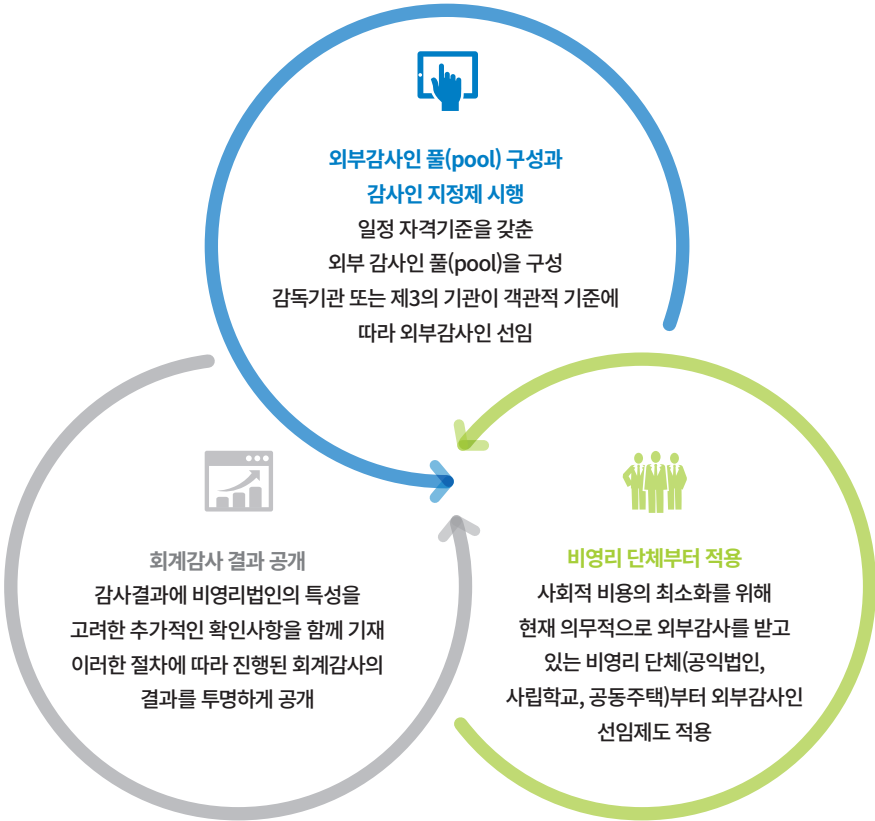
02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 외의 추가적인 확인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04

위 방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하되, 추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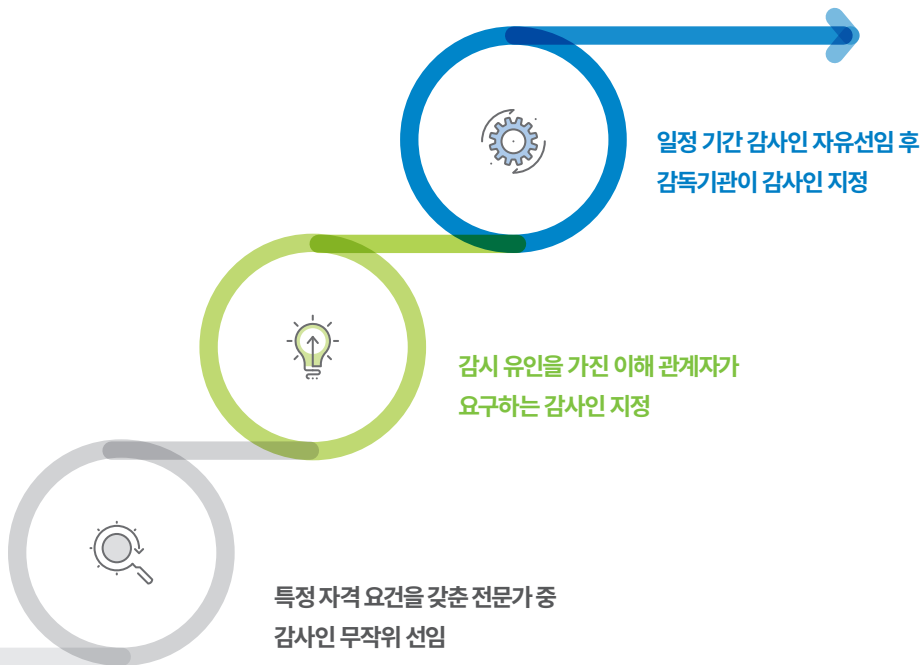
현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익위원회’ 설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한다.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은 국세청의 출연재산 비과세혜택 확인이 거의 유일하며, 이를 위해 1차적 감독방안으로 공익법인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 사학 비리 발생 이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도 회계감사를 도입한바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3년 관리비 부정·비리가 사회문제화되어 2015년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였으나 관리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비영리 분야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인지정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공익법인, 사립대학과 공동주택을 주주관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차적인 감독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를 받는 단체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현 시스템으로 인해 객관성 결여, 부실감사,
유착관계로 인한 면죄부주기식 감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외부감사인 선임 방안



정책 동향

정부 각 부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공익법인이 4년 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그 후 2년 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였다.

사립학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추진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가 6년 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 후 3년 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공동주택 감사인 추천 요구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1/10 이상의 입주자가
요구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감사인 중에서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을 제안한 경제분과

김판준, 김호균, 박성중, 박영기, 박현규, 이상학, 이지윤, 이재형, 이호영, 최문석, 황보훈 위원

“회계 투명성이 우리 경제의 신뢰 네트워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성중 안양대학교 교수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박성중 위원은 경제분과 위원들과 함께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특히 공익법인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나 기부금 같은 소중한 정성으로 마련되고 있어서 어떤 분야보다도 신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Q. 제안서로 의결되었을 때 소감 저희 분과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논의사항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고, 예정된 시간을 넘기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제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참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Q. 기대되는 변화 처음에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안이 사회적 공감을 얻어서 각 부처 및 사회 여러 분야의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안한 시점(2018년 11월)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2019년 11월), 국회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공공기관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변화에 작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 전반이 조금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타 협의회와 다른 점 정부의 위원회에 많이 참여해보았지만 민과 관이 함께하는 위원회는 처음이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위원회는 말뿐이고 정부가 주도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관은 최소한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Q.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저는 이런 유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개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다는 부정의 3요소에 대한 학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가 협업하여 청렴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이런 민관협의회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2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행을 중단하여 재정 낭비와 부패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01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개념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삭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다.

02

정부와 국회는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요구를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 등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03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특수활동 수행자에게 지급한다.

04

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사·정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05

감사원 등은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한다.

2018년 11월 2일

소관 분과 | 정치행정분과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다르게 쓰일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특히 2018년 7월 국회의 과거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특수활동 편성과 집행관리에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에 들어서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편성을 중단하기로 하고, 국회도 대폭 삭감했으나 이것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당한 편성과 집행이 근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수활동비 개념 정의 명확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특수활동비 개념 정의 (적용범위)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삭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금액 감축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를 중단·감축
외부의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객관적 기준을 마련, 예산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사



특수활동비 선지급 금지

실제 업무 수행자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요청할 때만 지급



특수활동비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및 공개

특수활동비 사용 기관의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감사원의 집행 실태 점검 결과 국회 제출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 주요 내용 국민들에게 공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면 조사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썼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 등이 전면적으로 감사하여 책임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규정을 폐지



2018·2019년 국회 및 정부 부처별
특수활동비*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총액	316,293	285,460	-9.7%
국회	6,272	980	-84.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650	9,650	0.0%
대통령 경호처	8,500	8,500	0.0%
대법원	256	0	-100.0%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65	0	-100.0%
감사원	3,096	2,322	-25.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984	757	-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17	4,776	3.4%
외교부	713	713	0.0%
통일부	2,144	2,461	14.8%
법무부	23,795	22,255	-6.5%
국방부	174,992	136,613	-7.7%
공정거래위원회	35	0	-100.0%
국민권익위원회	380	0	-100.0%
국세청	4,359	3,487	-20.0%
관세청	564	451	-20.0%
방위사업청	30	0	-100.0%
경찰청	94,079	84,135	-10.6%
해양경찰청	8,762	8,360	-4.6%

출처_ 기획재정부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정책 동향

국회와 정부 각 부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 개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폐지 및 예산 감축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법원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였고, 정부 14개 부처 및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실시

감사원은 2019년 3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는 수감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수립에 반영된다.

특수활동비 사용대상 명확화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의 예시로 ‘외교·안보·경호’를 명시 하였다.

특수활동비 사용 직원교육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에서 연 1회 이상 특활비 사용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 하도록 했다.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 개선을 제안한 정치행정분과

권수현, 나지수, 류홍번, 박근용, 박준, 박태서, 안성훈, 이지문, 이재근, 조창훈, 조태준, 한춘희 위원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수활동비의
편성과 집행은 엄격하게 감시·관리되어야 합니다
”



박근용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

2018년 박근용 위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자료를 입수해 국민에게 알렸다. 국회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고, 반부패와 청렴, 정부기관의 투명성을 위해 모인 민관협의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실체를 파악해 개선방향을 잡는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 개선>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과 제안하였다.

Q. 제안서가 의결되었을 때 권익위원장님을 포함해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이라 더 뿌듯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사용 금액 축소에 머물지 않고, 집행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 개선에 대한 것이라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안서가 채택된다고 문제가 바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의결 이후에도 민관협의회가 제안 내용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타 협의회와 다른 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계층이나 직역의 범위가 넓다보니 정보, 가치관 등이 다를 수 있어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것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기구의 특징이자 존재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에 앞서 참여했던 두 종류의 정부기관 위원회나 협의회 경험에 비해서도 참석자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는데,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에 큰 사회적 현안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문 채택을 제안했다가 보류되었을 때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단점으로 느껴져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Q.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바라는 점 민관협의회에서 채택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열 가지를 고치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두 가지라도 확실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초 이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관협의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3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을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01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 제한기간 동안 법조연구·교육 등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02

공직에서 퇴임하여 개업한 변호사가 퇴임 전 소속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현행 1년)을 연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03

법관이 퇴직 후에도 경륜을 활용하여 재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법관 제도를 도입한다.

0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의 공개 및 심사절차의 강화 등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법조계의 전관특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전관특혜 근절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법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전관예우’ 아닌 ‘전관특혜’ 용어 사용

전관예우는 ‘퇴직한 관리에 대하여 예를 갖추어 대우한다’는 뜻으로, 전관에 대한 부당한 특혜까지 정당화할 우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상 부당하게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를 ‘전관특혜’라고 표현



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제한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등록 제한 기간 동안 공익활동 권장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처벌 도입

현행 1년의 수임 제한 기간 연장
수임 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사건 수임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도입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법관이 정년 후에도 종사가 가능하고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며 임명 직전 급여의 70% 정도를 받는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예시)



전관예우 감독기능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공개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사건 수임 관련 심사절차 강화 등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현행 「변호사법」 규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출처_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 동향

정부 각 부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발표

법무부는 2020년 3월 전관 변호사의 前 소속기관 사건 수임에 대한 제한기간 연장, 前 본인 담당 사건 수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조윤리협회의 전관특혜 감독기능 강화, 전관특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및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이 상정되어 논의되었고, 이 자리에서 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의결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정책 제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前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前 본인 담당 사건 수임에 대한 처벌 강화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감독기능 강화는 법조비리 관련 신고센터 조사전담반 설치 및 현장 조사권을 강화하고 각 검찰청에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 등이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제안한 총괄분과

구익청, 김대건, 김성현, 김은희, 박홍식, 손계성, 양세영, 유한범, 이진태, 이담, 이민창, 이정희 위원과
김정완, 김호균, 류홍번, 이승익, 이재권, 황영식 각 분과장

“
사법부가 자발적이고 보다
속도감 있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법조계 고위직에서 퇴임해 개업한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에 대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전관예우’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지는 오래다. 전관예우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사법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게다가 법조계 최고위직인 대법관의 개업이 계속되고 있어,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 제한 및 사건 수임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무겁게 본 총괄분과 위원들은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제안하였다.

Q. 제안서가 의결되었을 때 소감 전관특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판이 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관행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협의회의 이런 제안이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해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안 과정 중 어려웠던 점 범사회적 협의체이지만 행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문의 행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 사안은 전 사회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행정 입법 부문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사회 각 부문을 대변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기대되는 변화 2019년 11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추진’ 등 대책이 발표되었고, 사법부를 넘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법부 내에서도 시니어 법관, 변호사 취업 사양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사법부가 자발적이고 보다 속도감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일 각 위원들의 다양한 관점이 합의를 통해 안건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분과의 방향성을 잡아갔다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Q.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바라는 점 제안 기능의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 확대, 1기부터 제안된 과제들에 대한 실천 상황의 점검과 조율, 협약추진에 대한 협의회의 점검과 평가 기능, 협의회 활동의 홍보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4

청렴사회협약의 추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면서, 청렴사회협약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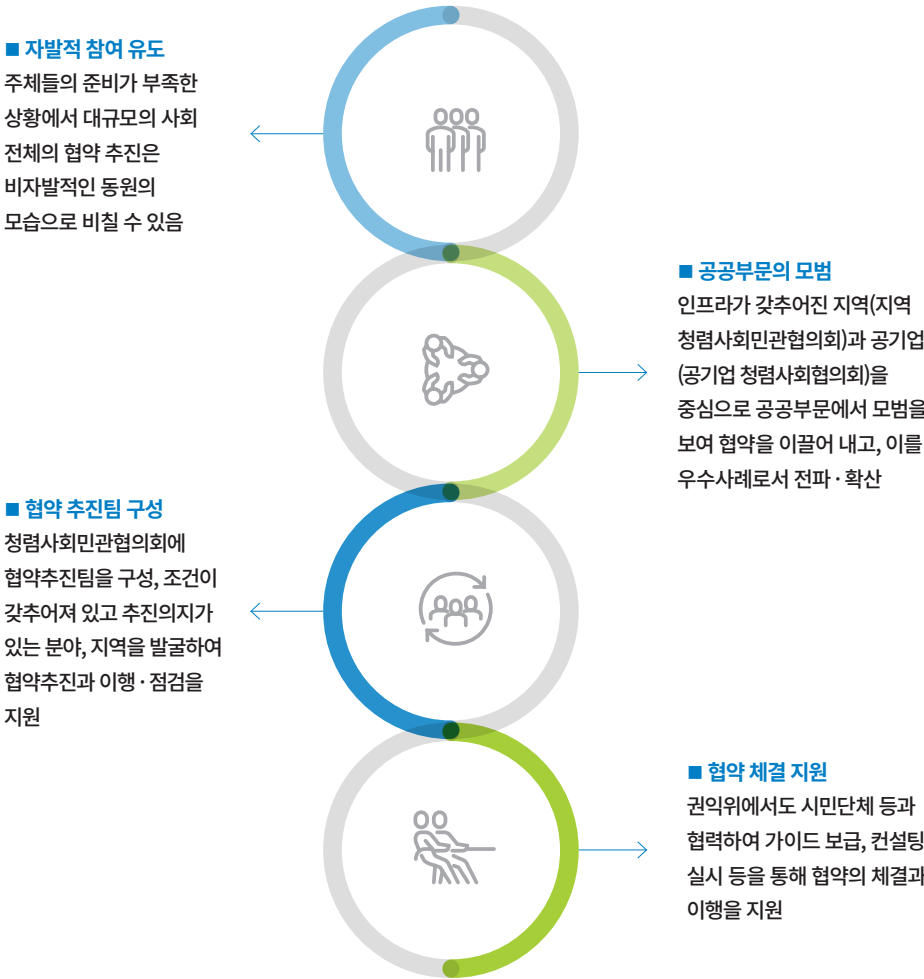
01
청렴사회민관협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에 참여하고, 협의를 통하여 해당 분야의 협약 체결 및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02
지역사회는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찾고 청렴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03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있는 청렴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포함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 이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04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청렴사회협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에 청렴사회협약 실무지침서(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참여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내실화의 한계, 느슨한 이행체계와 협치의 미숙,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파기된 ‘투명사회협약’을 교훈으로 새로운 <청렴사회협약의 추진>이 요구되었다.



청렴사회협약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시민사회, 경제계, 정치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약속이다.



정책 동향

국민권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청렴사회협약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렴사회협약 추진준비단 구성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019년 5월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감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의, 경총, 공기업협의회 등 14개 단체와 함께 청렴사회협약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였다.

협약 가이드북 발간 및 방문 컨설팅 실시

국민권익위는 협약의 의의, 추진과정, 이행, 평가 등을 소개하는 ‘청렴사회협약길잡이’를 발간·배포하고 2019년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 2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시민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부패현안을 논의하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중소기업, 국방, 방위사업, 공기업, 회계, 금융 분야의 민·관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협약문을 도출하고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청렴사회협약의 추진을 제안한 총괄분과

구의청, 김대건, 김성현, 김은희, 박홍식, 손계성, 양세영, 유한범, 이견태, 이담, 이민창, 이정희 위원과
김정완, 김호균, 류홍번, 이승익, 이재권, 황영식 각 분과장

“
부패 문제의 해결은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유한범 위원은 총괄분과
위원들과 함께 민관이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05년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이 서약하고 실천해 나가는 <청렴사회협약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Q. 제안 과정 중 어려웠던 점 2005년과 다르게 밑에서부터
추진되는 방식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거창한 이벤트가 없어
구체적인 모습을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
뽑기 위하여, 2005년 3월 9일에 정부 · 재계 · 정치권 · 사회단체
등이 체결한 반부패 협약

Q. 기대되는 변화 우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청렴사회협약>이 체결되어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청렴사회를 위해 논의하고 실천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 국방과 방위사업 분야, 고용노동 분야, 회계 분야 등 그동안 반부패
영역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야에서도 민관이 함께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는 틀이
구성되어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타 협의회와 다른 점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가끔
보이는 모습처럼 관을 위하거나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각 조직이 주체성에
기초한 제안을 해서 좋은 방안들이 의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된 주제의 대부분이
참여자들이 준비하고 민주적인 토의과정을 거친 점은 협의회 조직의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바라는 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 부분의 참여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와 노동, 정치 부문이 더 참여해
우리나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의결된 내용을 입법에도 속히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Q. 1기에 이어 2기 위원으로서 활동 각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2기는 조직체계는 더
간명하지만 참여자들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부패에 전념하는 조직에
속해 있고, 다른 참여자들은 각 영역에서 고유의 일을 하면서 청렴사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더욱 청렴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5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01

정부와 국회는 지역 주민에게 정확한 겸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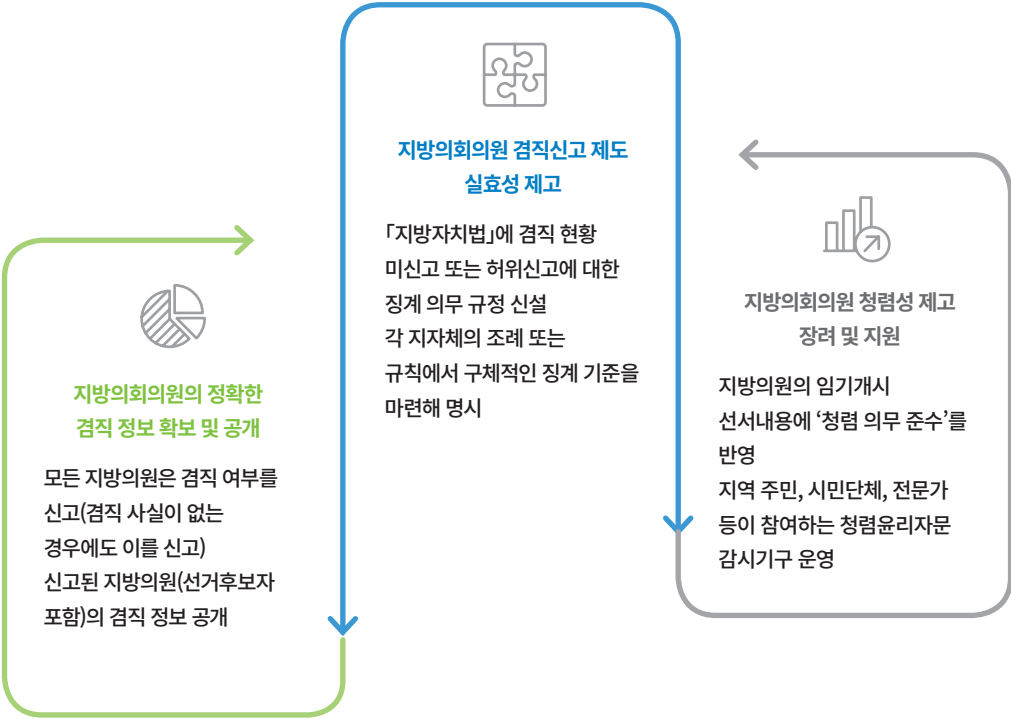
정부와 국회는 겸직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겸직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는 조례 또는 규칙에 각 위반 유형에 관한 징계 수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한다.

03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청렴성 제고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취임선서에 청렴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지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겸직에 관한 감시·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비판·견제·감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청렴성이 담보될 때 지방의회 본연의 심의·의결 기능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해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와 겸직을 감추기 위한 미신고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에 관한 정보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핵심 정보인 만큼 반드시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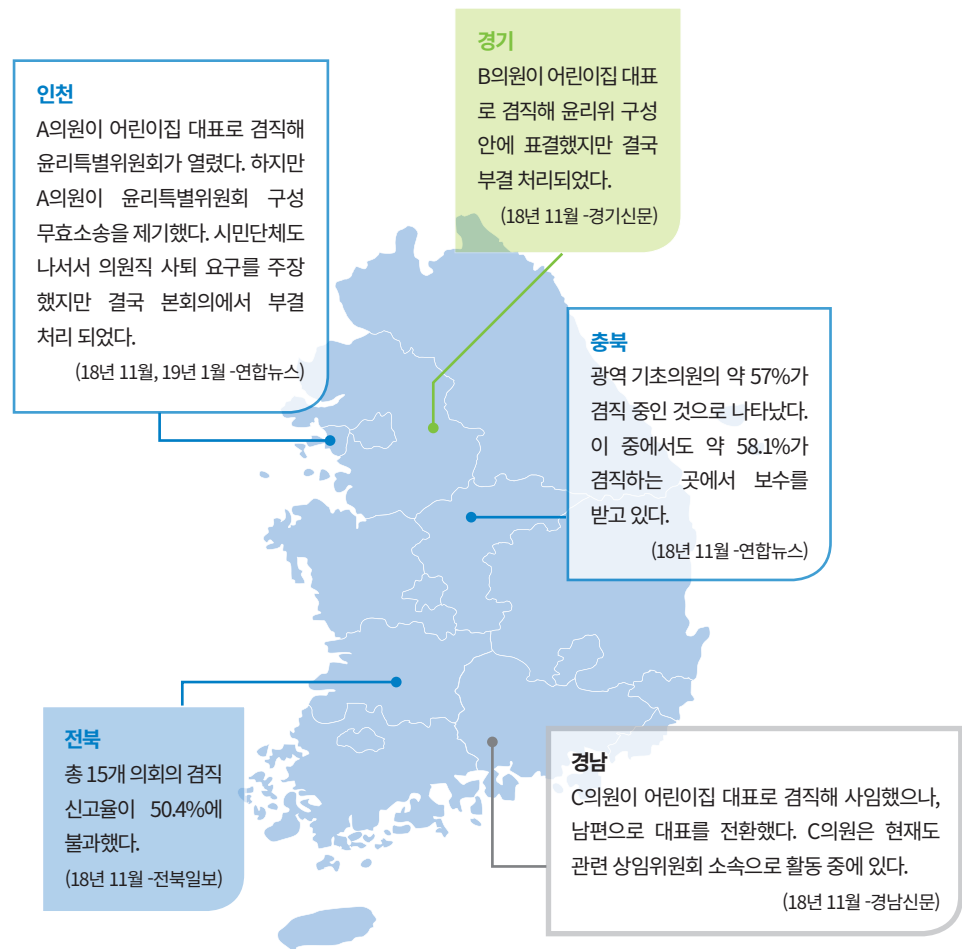
*이해충돌 :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겸직 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신고 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겸직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겸직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처벌이나 징계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징계요구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방의회의원 겸직 사례



정책 동향

정부 각 부처와 지방의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 겸직관리 제도 강화 확산

2019년 3월 지방의원 겸직 현황은 19개 지방의회에서만 공개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114개 지방의회로 확산되었다. 또, 2019년 3월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한 사례는 62개 지방의회에 불과했으나 12월에는 145개로 확대되었다. 겸직 규정 위반 징계기준을 마련한 지방의회도 2019년 3월 45개에서 12월에는 127개로 늘었다.

지방의원 겸직 제도 우수사례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7월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광역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열어 겸직신고 및 겸직제한 우수사례 등 토착부패 근절을 논의하였다.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발간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 지방의원 겸직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겸직제한 범위 사례, 법제처 유권해석, 행안부 질의회신, 관련 판례 등을 상세 소개해 지방의회, 지자체, 지방의회협의체 등 300여 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를 제안한 지역분과

김경희, 김세환, 김찬동, 백우진, 윤태웅, 이육희, 전명기, 추지현, 한수민, 황영식 위원

“
지방의원의 겸직정보 공개는 지방의정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입니다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에 관한 문제와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윤태웅 위원은 지역분과위원들과 함께 지방 의정활동의 공정성 강화와 주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과 주민 감시 강화 방안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Q. 제안서로 의결되었을 때 소감 2018년 11월 제가 속한 지역분과위원회에 첫 제안이 이루어진 후 2019년 7월 청렴사회민관협회의 공식 제안사항으로 결정되기까지 수차례의 회의와 총괄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특히 동심동덕(同心同德)해 주신 우리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회가 타 협의회와 다른 점 일부 정부위원회의 경우,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원활한 의사결정 및 성과도출을 위해 위촉위원의 참여 범위와 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사회민관협회의 경우, 추진 목적이나 기구 특성상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대표자 또는 추천자들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정해진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안건을 정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 역시 청렴사회민관협회가 가진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바라는 점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은 주로 사회 각 분야별로 부정적인 부분을 밝히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회의 활동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및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 공동의장 명의 표창장 수여,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확산 등은 어떨까요.

Q.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청렴’이라는 단어가 매우 가치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가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청렴’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나 의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와 같이 특정 계층이나 조직, 집단에 대해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청렴사회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측면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의 동의와 합의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6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01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03

권익위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지침을 개발, 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05

공익신고자 보호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계약 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0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 관련 변호사 비용, 필요 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등 구조금 지급 항목을 확대 하고, 지급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추적 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것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04

공익신고를 대리 접수하는 신고대행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 점검하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지침을 배포하는 등 신고대행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019년 10월 14일

소관 분과 | 공정신뢰분과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넓지 않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실효성 제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항목을 다양화* 및 지급금액 현실화
신고자 추적관리를 통한 선제적 긴급구조금 지급

*다양화: 공익신고 관련 변호사 비용, 필요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등



■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실시

모든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대리신고 접수
대리신고 지침의 개발·보급을 통한 각급 기관의 신고자 보호 역량 강화



■ 신고대행업체 관리 체계 마련

신고대행업체의 운영 실태 파악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업무 지침 배포



■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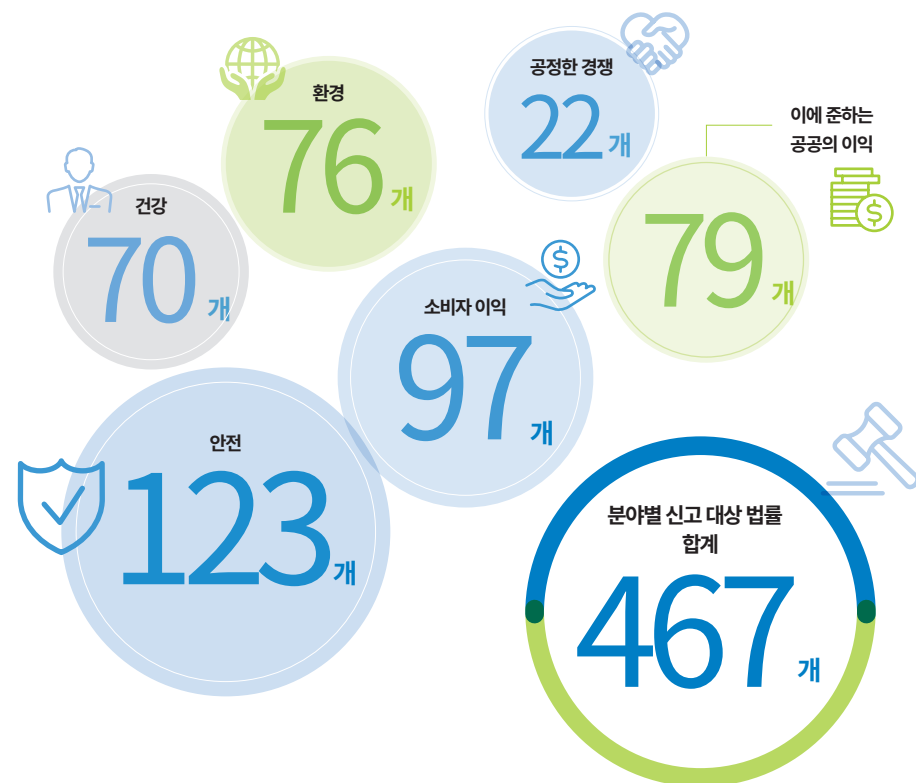
생애주기별 청렴교육(공익신고 포함) 의무화
공공계약 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 업체에 가점 부여

2011년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후
2019년 말 기준 33,452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자의 보호요청은 141건 접수되어 38건 인용되었으며, 구조금*은 총 16건(2,590만원)이 지급되었다. 2018년 5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2018년 10월에는 변호사 대리신고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6개 분야 467개 법률 위반행위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구조금 : 공익신고로 피해를 받았을 때 치료비, 소송비,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제도

분야별 신고 대상 법률



정책 동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익신고 인정범위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5월, 공익신고 관련 보호조치, 보상금, 구조금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하였다.

- 신규 추가 법률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공공보건의료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법, 미세먼지저감특별법 등

부패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0월 부패신고 분야에도 치료비용,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배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 중앙부처,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신 개정안을 배포하였다.

신고창구 위탁운영 현황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8월부터 세 달 동안 신고창구 위탁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신고접수 대행 유의사항을 보급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제안한 공정신뢰분과

권재열, 김원동, 배귀희, 이영이, 이재일, 이천현, 장영신, 최창욱, 한유나 위원

“배신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고 존경받는 청렴사회를 기대합니다”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유나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이영이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재일, 이천현, 한유나, 이영이 위원은 공정신뢰분과 위원들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신고 활성화는 물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Q. 공동 제안의 계기

이영이 실제로 공익제보자로 활동하고 발제한 이재일 위원님,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유나 위원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법률 지식, 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천현 위원님, 그리고 공익제보자로서의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나가다 보니 공동 제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기대되는 변화

이영이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반부패 개혁 및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도 이 제안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해 공감하며 각각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유나 제안서와 관련해서 현장 전수조사나 법률 변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잘 추진되어서 내부제보 및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이천현 처음에는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각 분과별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어 지금은 그 성과에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한유나 다른 영역의 분들과 청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청렴이라는 것은 모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타 협의회와 다른 점

이재일 다른 위원회들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의견에 대한 발언, 의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 위원회보다 회의 참여 횟수도 많고,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담스러운 작업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봉사하는 심정이 아니면 업무와 동시에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천현 각각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회 각계의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스스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고, 제안서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의 ‘직접’ 작성은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는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는 큰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그 만큼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일

이재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다 보니, 법규의 미비보다 우리 마음속의 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나를 공익신고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한유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대부분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회의 때에는 공정신뢰분과에 맞는 주제를 찾기 위해 다들 고민하고, 주제가 정해졌을 때는 열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시각을 조정해가는 모습이나, 제안서가 통과되었을 때 모두 기뻐하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Q.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이영이 위원님들은 현장에서의 의견을 잘 모아 전달하고 제안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유나 각 조직이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부패를 보고도 부패하다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때문이니까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재일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책 발굴, 혹은 정책적으로 영향을 준 것을 국민들이 잘 알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천현 지속가능한 민관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계속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7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현재 시행 중인 아파트 先분양 제도를 악용한 일부 건설사의 무단 설계변경
하향시공 등 원가절감 관행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반칙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先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01

정부는 건설사의 무단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
이득을 차단하고 입주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하자를 판정하도록 하고,
건설사로 하여금 설계도면 준수 여부 등 감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02

정부는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외장재를 임의로 하향 변경하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중요 내·외장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외장재의 변경은
반드시 기존 자재보다 더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제한하며,
건설사로 하여금 내·외장재의 변경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03

정부는 아파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에게 제공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 항목을 규정하고, 마감
자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감리 사항에
포함한다.

04

정부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택법에서 정한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사용 검사가 철저히 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019년 12월 12일

소관 분과 | 총괄분과

아파트 先분양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착공과 함께 입주자에게 먼저 분양을 하는 제도로 입주자가 미리
납부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사업주체의 자금 부담이 적고, 아파트 공급
사업이 활발한 장점이 있지만 先분양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면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난다.

■ 하자 판정 기준 개정 및 감리 결과 통보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
건설사는 감리자로부터 받은 설계도면 준수 여부와 건축·마감자재 확인 등 감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고지

■ 중요 내·외장재 변경 시 품질 향상 및 입주자 통지 의무화

중요 내·외장재를 구체적으로 지정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반드시 기존 자재보다 더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 사실은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마감자재 목록표 부실작성 및 자재 임의변경 관행 개선

마감자재 목록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 : 핵심부품 제조사, 모델명, 단가 등

마감자재의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당초 마감자재의 품질보다 더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했는지를 감리 확인사항에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철저

감리자 실태 점검과 사용 검사를 철저히 하고 내실 있게 진행

아파트 先분양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처음 설계된 대로 소비자에게 알린 자재를 사용하여 하자 없는 아파트를 짓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잘못된 건설관행이 근절되고 청렴문화가 싹틀 수 있다.



정책 동향

정부 각 부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주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건축·구조·안전·품질 등 시공품질을 점검하여 시·도지사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였다.

감리 확인사항에 ‘방수·방음·단열시공’ 추가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주택 감리자의 업무 중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 확인’을 명시하여 주택법 시행령에 추가하였다.

사업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 계획변경을 승인(중요사항)하거나 사업자로부터 통보(경미사항)받은 경우 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제안한 총괄분과

구의청, 김대건, 김성현, 김은희, 박홍식, 손계성, 양세영, 유한범, 이진태, 이담, 이민창, 이정희 위원과
김정완, 김호균, 류홍번, 이승억, 이재권, 황영식 각 분과장

“
아파트 先분양 제도를 악용한
무단 설계변경과 하향시공은 반칙입니다
”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공영제추진팀장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 先분양제를 악용해 설계변경, 하향시공,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구의청 위원과 총괄분과 위원들은 아파트 先분양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대다수가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아파트 시장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아파트 先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Q. 제안 과정 중 어려웠던 점 2019년 2월부터 안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받은 12월까지, 짧지 않은 시간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Q. 기대되는 변화 제안 내용대로 선분양 제도가 개선된다면 건설사의 불법 하향시공 등이 크게 감소해,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제대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런 형식적인 걸 왜 또 만드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다양한 안건들에 놀랐고,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가 타 협의회와 다른 점 민관협-실무협-전문분과의 3단계 다층적(多層的) 구조라는 점과 분과별로 인원이 많은 것, 그리고 회의 때마다 매번 참석하시는 권익위원장님의 모습에서 이 협의회는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에 바라는 점 3단계 다층적 구조를 2단계 구조로 개편한 만큼, 당초 기대했던 효율성·효과성이 잘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최근에는 공수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개편 결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8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에 기회균등과 능력의 실증 원칙을 확립하고 사학비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사립학교 학사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01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하여 기초적인 업무능력과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청의 평가를 거친 자에 한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02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교육청 평가를 거쳐 공개 경쟁채용 되지 않은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지 않는다.

03

사립학교 이사 또는 학교장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직원의 소관 업무를 관할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공립학교 사무직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건비가 국가예산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역시 공립학교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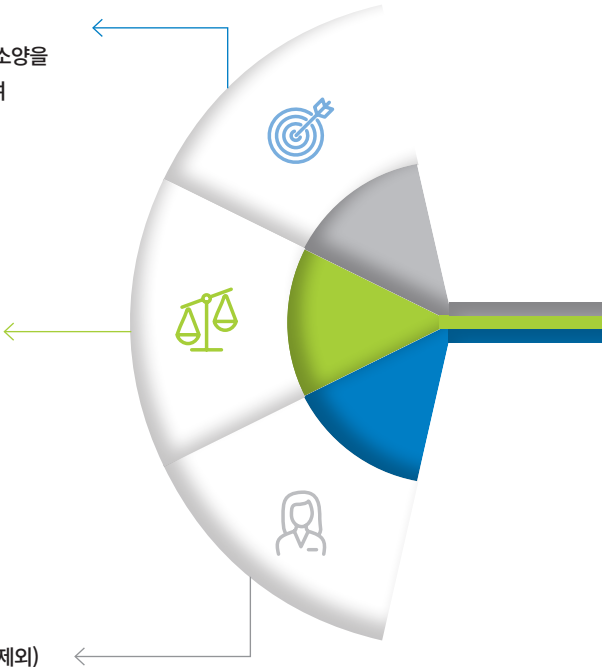
사립학교 사무직원 자격평가제도 도입

사·도 교육청 주관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 평가제도(가칭)’ 운영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업무 처리능력과 기본소양을 갖춘 자에 한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지원자격 부여

신규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 원칙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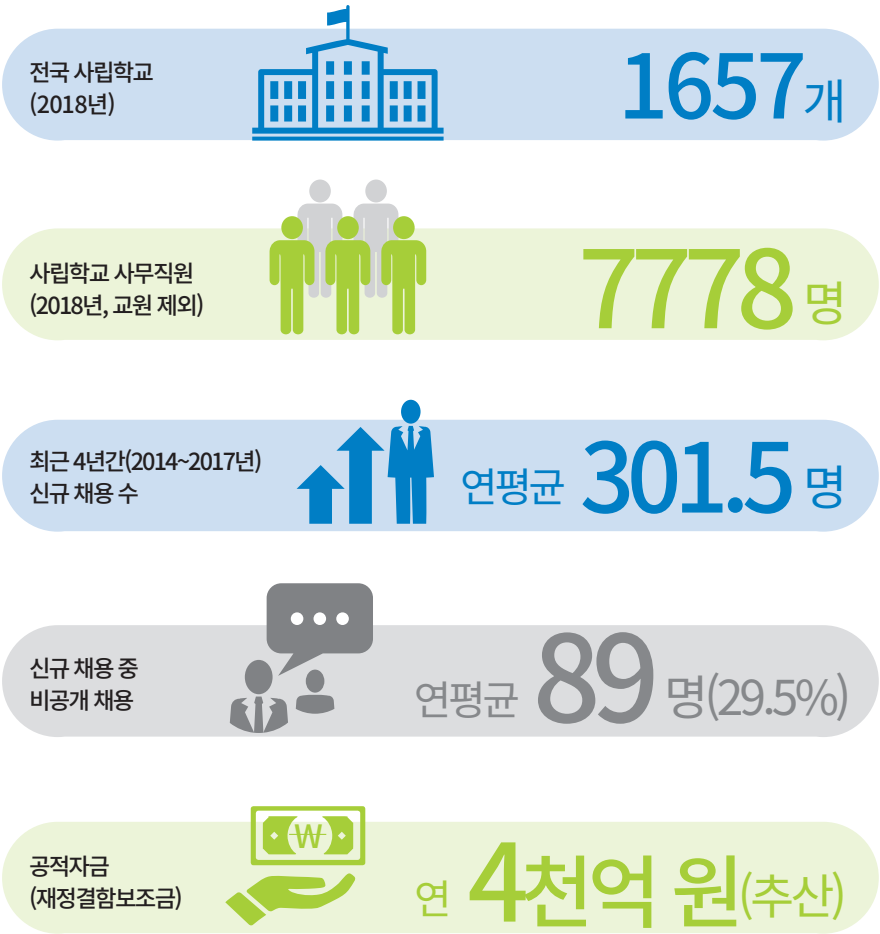
「사립학교법」에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 원칙 명시
교육청 평가를 거쳐 공개경쟁채용 되지 않은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급 제한

사립학교 이사 학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시
사립학교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현황 공시(공개경쟁채용 시 제외)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현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채용’의 과정에서 자칫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채용 과정은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공적자금(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사립학교에 연 4천억 원(추산)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책 동향

정부 각 부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 청렴사회협약 추진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교육 분야 청렴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교육부는 2019년 12월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채용비위 등 중대비리 사립학교 사무직원
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징계·해임요구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를 제안한 교육분과

김나래, 김정완, 남은주, 박용군, 백상현, 신준철, 안종훈, 양동훈, 이승익, 전경원, 지세선, 한수진 위원

“ 공적자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직원 공정하게 채용되어야 합니다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 혈세(보조금)가 들어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채용은 최소한의 기회 균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립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재단이나 교장이 사무직원 신규채용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진과 실무자 간의 사학비리 가능성, 자격미달자 채용에 따른 학사행정 저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안종훈 위원은 교육분과 위원들과 함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Q. 제안으로 기대되는 변화 이 제안이 제도로 도입이 된다면, 첫째는 공무원과 똑같이 보수를 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공무원에 준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매년 최소 300곳 이상 생기며,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균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일정한 기준의 업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사무직원으로 선발함으로써

사립학교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강화된 행정력은 교육적 특색을 살린 각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Q. 기억에 남는 일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안서 발제를 발표하려고 나서던 아침입니다. 7시 30분에 시작하는 회의 시간을 맞추려고 새벽부터 서둘렀습니다. 이르다면 이른 시간이었는데 부지런히 나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힘이 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Q. 제2기 청렴사회만관협의회에 바라는 점 제안서 의결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제안서 의결 이후에도 협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저는 사립학교 교사이면서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공익신고자입니다. 해직과 복직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그보다도 더 힘들었던 일은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배척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비리를 신고해야 정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신이 속한 내부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은 배신자나 고자질쟁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신자’나 ‘고자질쟁이’가 아닌 ‘공익신고자’로 부를 수 있는 사회가 성숙한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사립학교는 결코 사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고 이러한 공적 자금에 따른 최소한의 책무성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 제안이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공적 자금과 그에 따르는 책무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 의 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발전 방향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반부패 의제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늘리고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를 통합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편, 협의회에서 의결된 정책 제안을 관계 기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였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정책 제안의 관계기관 전달체계 강화

민관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 제안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제도개선 과정에서 참고·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서 전달 채널을 확보하고 정비한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 개편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패 현안 대응 및 반부패 개혁 의제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Point 1. 위원 정수 확대

민관협의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린다.



Point 2.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 통합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가 분야별 실무분과협의회로 통합한다.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 (2020년 2월 26일부터)



실무협의회
총괄분과(20명)
공공정책분과(20명)
경제분과(20명)
교육분과(20명)
지방자치분과(20명)
사회분과(20명)



제1기 협의회 위원 임기 말(2020년 2월) 기준

제1기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제1기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 말(2020년 2월) 기준

제1기 전문분과위원회



* 분과에 참여한 전체 위원 기재

정치·행정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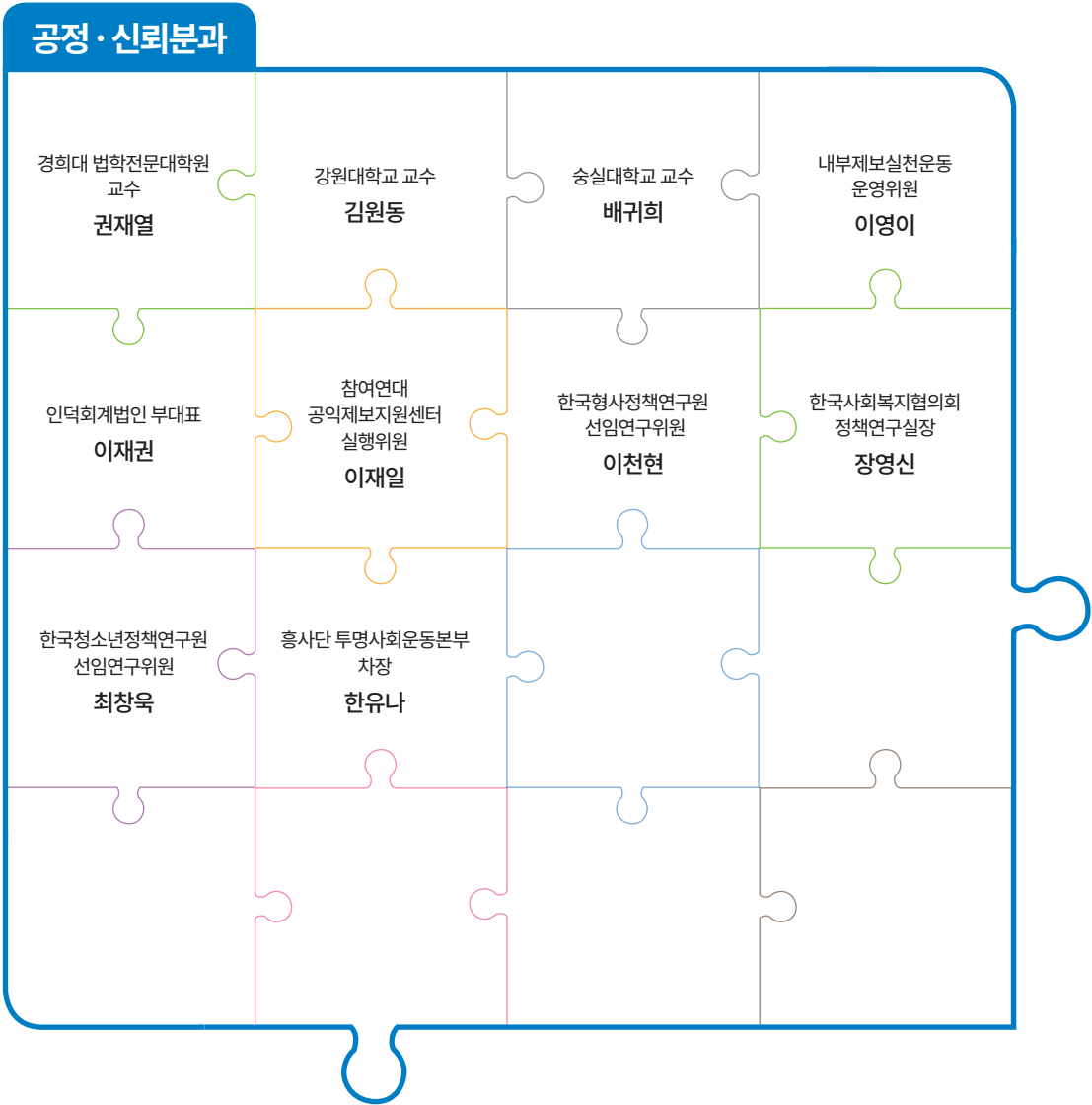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권수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나지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류홍번	참여연대 집행위원 박근용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준	한국방송공사 부장 박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성훈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 이지문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창훈	상명대학교 교수 조태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한춘희

경제분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영관리팀장 김판준	명지대학교 교수 김호균	안양대학교 교수 박성중	JT캐피탈 상임감사 박영기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박한규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상학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위원 이지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재형
연세대학교 교수 이호영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경영팀장 최문석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황보훈	

교육분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김나래	대진대학교 교수 김정완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남은주	명지전문대학 교수 박용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변호사 백상현	여성신문 상임이사 신준철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안종훈	서강대학교 교수 양동훈
울산과학기술원 상임감사 이승억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행정지원본부장 지세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위원, 변호사 한수진

지역분과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희	영남대학교 교책직원교수 김세환	충남대학교 교수 김찬동	에너지경제신문 금융증권부장 백우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윤태웅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이욱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연수센터장 전명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추지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위원 한수민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황영식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성과보고서
대한민국에 청렴의 꽃이 피었습니다

발행일 5월 25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_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스토리텔링·디자인 에이플러스_ 044-903-1514

본 출판물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